

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

현 행	개정안
제9조(연구업적의 평가기준) 연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2>에 의한다. (별표 개정2019.3.1.2023.9.1)	제9조(연구업적의 평가기준) 연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2>에 의한다. (별표 개정2019.3.1., 2023.9.1., 2024.9.1)
	부칙 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

별표 2 (미용, 뷰티케어 전공 신설: 2024년 9월 1일)

 파평가자 소속: 직급: 성명:
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: 미용,뷰티케어 전공)

1. 전시회 및 발표회

구 분	평가항목 배점	평가기준	확인	평가자 평점 (%)
국제 행사 및 단체 수상 및 작품 전시회	100%	국제 뷰티 관련행사는 회원국이 2개국 이상 구성된 뷰티 관련 단체에서 주최, 시행하는 행사를 말함.		
국내 행사 및 단체 수상 및 작품 전시회	70%	국내 뷰티 관련 행사는 전국 규모로 주최 시행하는 행사를 말함.		
개인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	100%			
4인 이하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	70%			
5인 이상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	50%			
10인 이상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	30%			
뷰티디자인作品集 제작	50%	作品集은 등록된 출판사(ISBN)에서 출판되어야 한다.		

2. 평가보고서 업적 및 중요보직수행이 있는 경우

구 분	평가 항목(배점 %) *해당란에 O표 할 것	평가 기준	확 인	평가자 평점(%)
※대학평가연구보고서	기관평가인증, 기타()			
※보직수행 (교무위원)	처장, 대학원장, 신대원장, 기타()			

※ 대학평가연구보고서와 보직수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될 경우에만 가능

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_____인

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_____인